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해양경찰청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3월 19일
해양경찰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11개 분야 81명

구분	경정 [1]	경감 [3]	경위 [2]	경장[30]				순경(45)										
				합정 요원		해경 학과		과학 수사 (사이버)	홍보 (영상)	정보통신		드 론	건 축	외국어(10) (중어)				
채용 분야	5급 경채	변호사	해양 기상	항 해	기 관	항 해	기 관			전 산	통 신			중부	서해	제주	남 2	여 1
81	1	3	2	9	6	9	6	5	6	7	7	5	5	남 2	여 1	남 4	여 1	남 2
임용	본청												중부	서해	제주			

2 시험 일정 및 절차

원서 접수	쏴 분야	3.25.(월) ~ 4.1.(월) <8일간>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https://gosi.go.kr				
절차	분 야		시험방법	시험일정(예정)	장소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경정	5 급 경 채	실기(구술)	5. 21.(화) ~ 24.(금)	인천	5. 28.(화)
	경감	변 호 사				
	경위	해 양 기 상				
	경장	합 정 요 원				

절차	분 야		시험방법	시험일정(예정)	장소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경장	해 경 학 과	필 기	6. 29.(토)	인천	7. 9.(화)
	순경	과학수사(사이버)	실기(구술)	5. 21.(화) ~ 24.(금)	인천	5. 28.(화)
		드 론				
		건 축				
		정 보 통 신 (전 산 , 통 신)				
순경	홍보(영 상)	실기(기능)	4. 13.(토)	세종	4. 16.(화)	
순경	외 국 어 (중 어)	필 기	5. 18.(토)	서울	5. 28.(화)	
		실기(구술)	6. 08.(토)	서울	6. 25.(화)	

2차 시험	경정	5 급 경 채	적성·신체 검 사	7. 13.(토)	인천	신체·체력검사 불합격자 현장고지
	경감	변 호 사				
	경위	해 양 기 상				
	경장	합 정 요 원	적성·신체· 체력검사	· 적성 : 7.13.(토) · 신체·체력 : 7. 15. (월) ~ 17.(수)	인천	
		해 경 학 과				
	순경	과학수사(사이버)				
		드 론				
		건 축				
정 보 통 신 (전 산 , 통 신)						
홍보(영 상)						
	외 국 어 (중 어)					

3차 시험	쏴 분야	서류전형	7. 24.(수) ~ 26.(금)		불합격자 개별통지
-------	------	------	--------------------	--	--------------

4차 시험	쏴 분야	면 접	8. 6.(화) ~ 9(금)		8. 23.(금) 최종합격자 발표
-------	------	-----	-----------------	--	-------------------------------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 시험별 장소 및 합격자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https://gosi.go.kr>) 게재 예정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발표일 17시경 공지 예정

3 근거 법령

-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및 제10조(신규채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2조(시험실시의 원칙), 제25조(시험의 방법), 제28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등

4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8.9.예정) 기준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3]

채용분야	채용계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5급경채	경정	27세 이상 45세 이하	'78. 1. 1. ~ '97. 12. 31.
변호사	경감	23세 이상 45세 이하	'78. 1. 1. ~ '01. 12. 31.
해양기상	경위		
합정요원 해경학과	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83. 1. 1. ~ '04. 12. 31.
그 외 전 분야	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83. 1. 1. ~ '06. 12. 31.

※ 응시연령 상한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관련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병역법」,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아 복무 중인 사람(현역) 중 「임용유예」 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는 교육원 입교 예정일(24. 9. 28.) 전까지 전역이 가능해야 하며, 전역불가 시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신체조건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 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 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색 신 (色 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함.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함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 제한 可)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함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90 ~ 60mmHg, 수축기 145 ~ 90mmHg 범위에 있어야 함)
문 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문신을 은닉하는 행위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 제한 可)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8.9.예정) 까지]

- 경력계산, 자격증 등의 유효여부는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계급	분야	응시자격					
경정	5급 경채	경 력	○ (공무원경력)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중앙행정기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경감	변호사	자격증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경위	해양 기상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①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②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5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기술사</td> <td>기상예보</td> </tr> <tr> <td>기 사</td> <td>기상, 기상감정</td> </tr> </table>	기술사	기상예보	기 사	기상, 기상감정
		기술사	기상예보				
		기 사	기상, 기상감정				
학 위	○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기상예보업무, 항공기상예보업무, 해양기상예보업무, 기상(기후·대기과학) 연구업무, 기상데이터분석업무 ※ 관련 전공 : 대기과학, 기상학, 천문학, 해양학, 지구과학, 물리학 계열 학과 (유사학과(학위)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경장	합정 요원	자격증	○ 4급 해기사 이상 면허 소지 후 국제항해(군·관공선 등 공무원 승선경력 미포함)를 포함한 승선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급 해기사: 상선면허, 어선면허 모두 포함 ※ 국제항해: 상선은 외국항 기항 여부, 어선은 원양어선 승선 기준 - 국내→외국, 외국→국내, A외국→B외국, B외국→A외국 모두 포함 - 승무경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출입항 기록 증빙이 가능한 선원수첩 사본 제출 ※ 항해사는 항해 분야, 기관사는 기관 분야 경력만 인정(항해·기관 교차지원 불가)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기간은 승선경력에 산입(휴가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필수)						
경장	해경 학과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복수전공 포함)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재학하였던) 사람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해양경찰 관련학과: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고시」 참고						
순경	중국어	자격증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 新BCT(B) 241점 이상 ○ 新BCT(B) L&R 801점 이상 ○ 新HSK 6급 190점 이상 ○ SNULT(듣기, 읽기) 총점 90점 이상 ○ FLEX(듣기, 읽기) 총점 850점 이상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2년 이내 자격증에 한함						
		학 위	○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국내학위에 한함) ※ 관련전공: 중어중문학과, 중국어학과, 중국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중국어교육과 <주전공 및 복수전공만 인정(부전공 미인정)> - 유사학과(학위)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성적 증명서상 전체과목 중 해당 언어 분야 전공과목이 1/2 이상인 경우 자격요건 인정)						
순경	과학 수사 (사이버)	자격증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학 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술사</td> <td>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사</td> <td>정보보안, 정보처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산업기사</td> <td>정보보안, 정보처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능사</td> <td>정보처리</td> </tr> </table> <p>①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② 관련전공 학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기사	정보보안,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보안, 정보처리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기사	정보보안,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보안,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 관련분야: 해킹·악성코드 분석 및 H/W·S/W 개발, 시스템·네트워크 관련 설계·개발·운영·보안, 디지털포렌식 ※ 관련 전공: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사이버보안, 디지털포렌식 - 유사학과(학위)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순경	홍보 (영상)	경 력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①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 영상기획, 영상제작, 영상촬영, 영상편집						

계급	분야	응시자격												
순경	정보통신(전산)	<p>※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p> <p>경 력</p> <p>① (민간경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IT관련)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② (공무원경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IT관련)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p> <p>※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p> <p>자격증</p> <p>○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p> <table border="1"> <tr> <td>기술사</td> <td>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td> </tr> <tr> <td>기능장</td> <td>전자</td> </tr> <tr> <td>기사</td> <td>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td> </tr> <tr> <td>산업기사</td> <td>사무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정보보안</td> </tr> <tr> <td>기타</td> <td>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td> </tr> </table> <p>○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table border="1"> <tr> <td>기능사</td> <td>전자,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정보기기운용</td> </tr> </table> <p>※ 관련분야 : 사무자동화, 정보기기운용·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메타버스, 빅데이터, 멀티미디어콘텐츠</p>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	전자	기사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타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기능사	전자,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정보기기운용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	전자													
기사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타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기능사	전자,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정보기기운용													
순경	정보통신(통신)	<p>※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p> <p>경 력</p> <p>① (민간경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IT관련)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② (공무원경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IT관련)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p> <p>※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p> <p>자격증</p> <p>○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p> <table border="1"> <tr> <td>기술사</td> <td>정보통신</td> </tr> <tr> <td>기능장</td> <td>통신설비</td> </tr> <tr> <td>기사</td> <td>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td> </tr> <tr> <td>산업기사</td> <td>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td> </tr> </table> <p>○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table border="1"> <tr> <td>기능사</td> <td>통신기기,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td> </tr> </table> <p>※ 관련분야 : 통신설비,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방송통신</p>	기술사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술사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순경	드론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①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②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자격증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헬리콥터 실기평가조종사(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학 위	① 관련전공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② 관련전공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학과 또는 전공이 드론 관련 분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빙 가능해야 하고, 세부전공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관련분야 : 드론 제작, 드론 연구개발, 드론 정비, 드론 촬영, 드론 교육 ※ 관련전공 : 드론공학과, 드론정보공학과, 소방행정안전드론과, 드론공간정보과, 드론미디어과, 드론기계과, 무인항공드론과, 시드론과, 드론과, 스마트무인항공과, 공간정보드론과, 드론건설환경과, 스마트드론과, 정보통신드론과, 드론융합과, ICT드론과, 드론봇부사관과, 컴퓨터드론과, 드론산업안전과, 드론융합학과, 드론제작운항과, 인공지능드론학과, 드론기계학과, 드론운용정비과, 드론항공과, 드론산업과, 국방드론항공과, 국방드론과, 무인항공기계과, 전투드론부사관과, 드론로봇공학과, 드론전공, 무인이동체공학전공, 드론학과, 드론·철도건설공학과,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 무인항공학과, 무인기산업학과, 무인항공기계학과, 무인항공기학전공, 무인항공기학과, 드론응용학과, 드론응용전공, 항공드론학과, 무인기공학과, ICT군사학부(드론봇전공), 드론운용과, 드론전자과 - 유사학과(학위)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순경	건축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 격 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table border="1" data-bbox="491 1249 1423 1391"> <tr> <td>기술사</td> <td>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td> </tr> <tr> <td>기능장</td> <td>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td> </tr> <tr> <td>기사</td> <td>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td> </tr> <tr> <td>산업기사</td> <td>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td> </tr> </table>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table border="1" data-bbox="491 1462 1415 1503"> <tr> <td>기능사</td> <td>건축목공, 실내건축</td> </tr> </table>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기능사	건축목공, 실내건축										
		※ 관련분야: 시설건축 및 건축물 유지관리, 건설현장 건축시공 및 감리, 건축설계 담당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기준,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경력①/경력②, 학위①/학위② 중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8.9.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은 합산되지 않음 유의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 여부)를 명시하고,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제출
- '경력'요건('학위',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 :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ex)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학위 · 자격증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에 따라 직렬(직류)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8.9.예정)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5 시험 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1차 시험(구술, 실기, 필기)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8조, 제32조·제33조)

채용분야	직급	평가방법	내용	
5급경채	경정	구술실기	○ 관련 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 능력	
변호사	경감			
해양기상	경위			
함정요원	경장			
해경학과	경장	객관식 필기 (과목당 20문항)	항해	○ 해양경찰학개론, 해사영어, 형사법, 항해학
			기관	○ 해양경찰학개론, 해사영어, 형사법, 기관학
과학수사(사이버), 정보통신(전산·통신), 드론, 건축	순경	구술실기	○ 관련 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 능력	
홍보(영상)	순경	기능실기	○ 관련 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 능력에 관한 기능평가	
외국어(중어)	순경	서술형 필기 (5문항, 90분)	○ 중국어↔한국어 번역 능력 * 주어진 문장을 이해하여 중국어는 한국어로(2문항), 한국어는 중국어로(3문항) 번역하여 문장을 완성	
		구술실기	○ 중국어↔한국어 통역 등 회화능력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시험범위

- 형사법 : 형법 전체,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분야(공소제기, 소송주체, 공판, 상소 분야 제외)
- 해양경찰학개론 : <붙임5 참고>

※ 합격자 결정(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항)

- ▶ (실기)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단, 임용기관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3배수 선발)
 - ▶ (필기) 쉰 과목 총점의 60%이상(매과목 40%이상) 득점자 중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 ▶ (필기+실기) <필기>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단, 임용기관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3배수)
<실기> 필기시험 합격자 중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총원
-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선정

나. 2차 시험(적성·신체·체력)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 종합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적성 검정(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신체검사 <붙임6 참고>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기준으로 신체검사 관장관이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합격자 결정
 - ※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체력검사 <붙임7 참고> ※ 경위 이상 경력채용 분야는 체력검사 미 실시
 - 총 5종목 실시 : ① 100 m 달리기 ② 윗몸일으키기 ③ 팔굽혀펴기 ④ 좌우악력 ⑤ 50 m 수영(Pass or Fail)
 - 매 종목 실격 없이 총점(40점)의 40%(16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① ~ ④ 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거나 ⑤ 종목에서 기준(남자 130초, 여자 150초 이내)에 미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도핑테스트 : 응시자의 5% 내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
 -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 참조 <붙임8 참고>

다. 3차 시험(서류전형)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시행규칙 제27조)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
 - ※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해진 자격요건이 최종시험일까지 갖추어 지거나 조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보류로 판단 가능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가산점 해당 여부 판단
 - ※ 인정되는 가산점수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gosi.kr>)에 개인별 공개 후 수정 기간(7.30.~31.)을 거쳐 확정되며, 공개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 불가
- 응시자 필수서류(전형별 합격자 제출서류 포함)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라. 4차 시험(면접)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시행규칙 제30조)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가능성, 성실성 등을 평가
 -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10점), 품행예의봉사성·정직성·성실성 및 발전가능성(10점)
- 면접평가(20점), 가산점(5점)을 합산하여 총점(25점)의 40% 이상(10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 단계별 면접위원 과반수가 단계별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 시 불합격

마. 시험 가산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 해당자는 원서접수 시 반드시 기재

구분	적용범위 및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필기, 실기시험, 체력,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	임용예정계급이 경위 이하인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 (참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 시행령 [별표 8])

- ※ **적용 분야** : 함정요원, 해경학과, 과학수사(사이버), 홍보(영상), 정보통신(전산·통신), 드론, 건축, 중국어_서해청_남
-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 대상 항목 및 가산비율을 표기한 사람만 적용됨(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 각 과목(필기시험)·항목(실기·체력·면접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경우는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 등에 확인 후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기재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가산점은 인정 불가
 -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붙임9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3]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 취득 가능
 - ※ 응시자격과 동일한 분야의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
- 가산 자격증은 별도 정해진 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자격증 중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4. 8. 9.)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사본 등)만 인정
 - ※ 자격증 발급기관의 규정에 따라 갱신을 받은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인정
- 가산 자격증 중 어학능력자격증은 최종시험예정일('24. 8. 9.)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

바.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제3항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반영비율
5급 경채, 변호사, 해양기상	실기 75%, 면접 25%
함정요원, 과학수사(사이버), 홍보(영상), 정보통신(전산·통신), 드론, 건축	실기 50%, 체력 25% 면접 25%
해경학과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
외국어(중어)	필기 30%, 실기 35%, 체력 10%, 면접 25%

- ※ 동점자 발생 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필기 → ③ 실기 → ④ 면접 → ⑤ 체력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최종합격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에 따라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 <붙임10 참고>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및 시간 : 2024. 3. 25.(월) 10:00 ~ 4. 1.(월) 17:00(기간 중 24시간 접수)
 - ※ 응시표는 2024. 4. 5.(금) 17:00부터 출력 가능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www.gosi.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 응시원서 제출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제출기간 종료 후 변경 불가
 - ※ 응시수수료는 경정 이상 10,000원, 경사 이상 경감 이하 7,000원, 경장 이하 5,000원이며 전자결제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 발생

※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
 ※ 면제대상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방법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제출시 안내 예정

- 원서접수 취소 :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제외한 납부한 응시수수료 반환

나. 제출서류(원서접수 시)

* 5급경채, 변호사, 해양기상, 함정요원, 과학수사(사이버), 정보통신(전산통신), 드론, 건축, 홍보 분야만 해당

- 제출기한 : '24. 4. 1.(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접수(택배, 퀵서비스 불가)
- 주 소

관서명	우편번호	주 소	문의전화
해양경찰청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 교육훈련담당관 인재선발계	032-835-2436 032-835-2736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과 경력사항을 기재하고 ①~⑤의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추가(보완) 서류제출 요구 **可<양식 별첨>**

구 분	내 용
1. 기본내용 기술서 1부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해당 사항만 작성
2. 주요경력 요약서 1부	○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3. 자기소개서 1부	○ A4 2매 이내로 작성(자필 서명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 A4 5매로 이내 작성 /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과 서명 기재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자필 서명 필수

※ 기한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응시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귀책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음. 제출서류의 입증책임은 응시자에게 있고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 불가

-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단면 1쪽 인쇄(기본 인쇄)로 하고, 모아 찍기 및 양면 인쇄 등 금지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함께 첨부
 - 모든 서류는 견출지, 스테이플러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편철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의사항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한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응시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귀책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음. 제출서류의 입증책임은 응시자에게 있고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 불가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8. 23. ~ 9. 23.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차 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별도 공지 예정

8 교육 및 임용

- 교육 입교일 : 2024년 9월 28일(예정) *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 교육원 입교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안내는 추후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 ※ 교육입교를 하지 않거나, 임용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등 사유에 따라 최종합격 취소 가능
(참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 임용 예정일 : 최종합격자는 결원인력 등을 감안하여 신임교육과정 평가 성적순으로 근무예정지에서 임용

9 안내 및 참고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을 소지하여야 하며 응시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에 열거한 신분증 외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양경찰청에서 공지한 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시험은 응시한 지역(본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중복 응시는 불가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공고문 기재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용시험 전형 중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목이 나누어진 실기시험은 전(前) 단계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합격자발표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등 경찰공무원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경우에 따라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으며, 응시대상자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야별로 예정된 채용인원을 충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색약(약도)자의 경우 경찰병원, 종합병원 또는 안과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서류 제출 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최종합격 이후 정해진 기간 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시행규칙」[별지 제9호]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제2항에 따라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 추가합격자 선정기간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마감일(9.6.) ~ 일주일 간(9.13.)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해양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 또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gosi.go.kr>)에 게재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 시간, 장소, 준비물 등 공지사항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갱신되는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 공지사항을 열람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지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훈련담당관 : 032-835-2436, 2636, 2736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for '민원증명' (Administrative Proof).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민원증명 이용시간** (Administrative Proof Usage Time):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연중무휴 24시간
 -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연중무휴 08:00 ~ 22:00
 - 사실증명발급신청: 연중무휴 09:00 ~ 24:00
- 민원증명 이용절차** (Administrative Proof Usage Procedure):
 - 01 홈택스 로그인
 - 02 민원증명 신청내행
 - 03 민원증명 처리결과
 - 04 발급완료 후 프린터 출력
- 민원증명신청** (Administrative Proof Application):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 증명
 - 폐업사실 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납부내역 증명(납세사실 증명)
 - 소득금액 증명
 - 소득확인 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표준채무제표 증명
 -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증명(사업장 증명)
 - 모범납세자 증명
 - 국세납세 증명 조회(경부관리기 관용)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소득확인 증명서(청년우대월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경찰공무원법」 제8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산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경정	1명	5급경채	본청, 지방청, 경찰서 (소속부서 포함)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기획업무 전반 ○ 정부 혁신·적극행정 발굴 및 주요정책 기획·추진 ○ 조직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 역량) 조직헌신,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및 조정능력 ○ (업무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전문성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청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 행정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 ○ 형법, 형사소송법 등 경찰공무원 업무처리를 위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 ○ 행정 관련 전문지식 ○ 정책 현안 분석 및 기획을 위한 전문지식 		
응시 자격 요건	※ 다음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력	○ (공무원경력)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합격한 후 중앙행정기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경감	3명	변호사	본청 및 소속기관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치, 불송치, 자체종결 사건에 대한 수사심사 ○ 영장 신청 전 영장심사 업무 ○ 검찰처분 및 법원판결 결과 심층 분석 ○ 수사 관련 법령자문 및 인권보호 시책 지원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형사법리에 대한 전문지식, 리걸 마인드, 논리력, 분석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보고서 작성능력, 협동의식, 긍정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형사소송법 등 형사법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 ○ 해양수산 법령에 대한 기본지식 ○ 수사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력 및 적법절차 준수 검토능력 ○ 범죄사실 특정 및 법리 적용 등 수사미비점 분석·검토능력 ○ 인권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	---

응시자격요건	※ 다음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경위	2명	해양기상	본청 및 지방청 종합상황실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상황관리에 필요한 해양·항공기상 예보 생산 ○ 해양사고 발생 또는 발생 우려 해역의 국지적 상세 기상정보 확인 ○ 해양 재난·재해 예측 및 대응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계급 역량) 지휘관 브리핑 능력, 상황인식·판단력, 보고자료 작성 능력 ○ (분야 역량) 기상분석 전문성, 상황분석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기도, 위성·레이더영상, 수치모델 등 기상분석 지식 ○ 기상예보·특보 용어, 절차, 기준 등 예보 관련 지식 ○ 함정 운항 관련 해양기상 전문지식 ○ 항공기 운항 관련 항공기상 전문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5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기술사</td> <td>기상예보</td> </tr> <tr> <td>기사</td> <td>기상, 기상감정</td> </tr> </table>	기술사	기상예보	기사	기상, 기상감정
	기술사	기상예보				
기사	기상, 기상감정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기상예보업무, 항공기상예보업무, 해양기상예보업무, 기상(기후·대기과학)연구업무, 기상데이터분석업무 ※ 관련전공 : 대기과학, 기상학, 천문학, 해양학, 지구과학, 물리학 계열 학과 - 유사학과(학위)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경장	9명	함정요원(항해)	함정 및 경찰서 등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직무 전반 ○ 항해장비 및 각종 설비 운영·관리, 항해 계획 수립 업무 ○ 해양법 및 해사관계 법령 등 해석 및 적용 업무 ○ 국내·외 해상에서 함정 조함, 수색·구조, 통신 업무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상황인식력, 판단력,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 ○ 함정 조함(국제항해) 능력, 함정 조직 이해능력, 항해 장비 운용 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영어 등 국제항해 관련 지식 ○ 지문 항법, 전파항법 등에 관한 지식 ○ 항해장비 사용법 ○ 해사관계법령, 해양법 관련 지식 ○ 함정의 구조·설비, 복원성 등 함정운용 관련 지식
-------	---

응시 자격 요 건	※ 다음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4급 해기사 이상 면허 소지 후 국제항해(군·관공선 등 공무원 승선경력 미포함)를 포함한 승선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p>※ 4급 해기사: 상선면허, 어선면허 모두 포함</p> <p>※ 국제항해: 상선은 외국항 기항 여부, 어선은 원양어선 승선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국, 외국→국내, A외국→B외국, B외국→A외국 모두 포함 - 승무경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출입항 기록 증빙이 가능한 선원수첩 사본 제출 <p>※ 항해사는 항해 분야, 기관사는 기관 분야 경력만 인정(항해·기관 교차지원 불가)</p> <p>※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기간은 승선경력에 산입(휴가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필수)</p>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경장	6명	함정요원(기관)	함정 및 경찰서 등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직무 전반 ○ 함정 주보조기관, 기관 장비 등 각종 설비 운영·관리 ○ 기관 비상 조치, 손상 제어, 기관 관리 업무 ○ 국내·외 해상에서 수색·구조 업무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상황인식력, 판단력,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 ○ 함정 기관(주보조기관) 유지보수 능력, 함정 조직 이해능력, 기관 장비 운용 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정 주기관, 보조기관 등에 관한 지식 ○ 함정 기관 비상조치, 손상제어 등 유지·보수에 관한 지식 ○ 유체기계, 환경오염방지기기, 기계공작법, 전기기기 등에 관한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 다음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4급 해기사 이상 면허 소지 후 국제항해(군·관공선 등 공무원 승선경력 미포함)를 포함한 승선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p>※ 4급 해기사: 상선면허, 어선면허 모두 포함</p> <p>※ 국제항해: 상선은 외국항 기항 여부, 어선은 원양어선 승선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국, 외국→국내, A외국→B외국, B외국→A외국 모두 포함 - 승무경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출입항 기록 증빙이 가능한 선원수첩 사본 제출 <p>※ 항해사는 항해 분야, 기관사는 기관 분야 경력만 인정(항해·기관 교차지원 불가)</p> <p>※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기간은 승선경력에 산입(휴가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필수)</p>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경장	9명	해경학과(항해)	함정 및 경찰서 등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직무 전반(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해양경비, 해양수색구조, 연안 안전관리, 해상질서유지, 해양 관련 범죄 예방·진압) ○ 항해장비 및 각종 설비 운영·관리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항해 장비 운용 능력, 함정 조직 이해능력 ○ 해양법 및 해사관계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능력 ○ 상황인식/판단력, 협동 및 의사소통 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해장비 사용법 ○ 해사관계법령, 해양법 관련 지식 ○ 지문항법, 전파항법 등 항해에 관한 지식 ○ 함정의 구조·설비, 복원성 등 함정운용 관련 지식
-------	--

응시 자 격 요 건	※ 다음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전문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복수전공 포함)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재학하였던) 사람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해양경찰 관련학과: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고시」 참고<붙임4>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경장	6명	해경학과(기관)	함정 및 경찰서 등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직무 전반(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해양경비, 해양수색구조, 연안 안전관리, 해상질서유지, 해양 관련 범죄 예방·진압) ○ 함정 주·보조기관, 기관 장비 등 각종 설비 운영·관리 ○ 기관 비상 조치, 손상 제어, 기관 관리 업무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함정 기관(주·보조기관) 유지·보수 능력, 기관 장비 운용 능력, 함정 조직 이해능력 ○ 해양법 및 해사관계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능력 ○ 상황인식/판단력, 협동 및 의사소통 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정 주기관, 보조기관 등에 관한 지식 ○ 함정 기관 비상조치, 손상제어 등 유지·보수에 관한 지식 ○ 유체기계, 환경오염방지기기, 기계공작법, 전기기기 등에 관한 지식
-------	--

응시 자 격 요 건	※ 다음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전문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복수전공 포함)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재학하였던) 사람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해양경찰 관련학과: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고시」 참고<붙임4>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5명	과학수사(사이버)	본청 및 소속기관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사이버범죄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해킹 & 크래킹, 서비스 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등) -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정보보호시스템, 사이버사기, 피싱·파밍·스미싱 등) -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 & 기업정보·저작권 침해 등) - 불법콘텐츠범죄(사이버 성폭력, 도박, 명예훼손·모욕 등) ○ 디지털포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디지털기기, 악성코드,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 등 분석 - PC, 모바일 등 각종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지원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업무역량) 기술적 전문성, 연구의식, 창의성, 의사소통능력, 관계 구축력, 결과보고서 작성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범죄 수사를 위한 문제 해결 능력, 추적방안, 최신 보안사고 사례 및 대응 등 ○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DB, 모바일 등에 대한 지식 ○ 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과 장비 활용에 대한 지식 ○ 디지털포렌식 관련 절차 및 판례에 대한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r> <td>기술사</td> <td>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td> </tr> <tr> <td>기사</td> <td>정보보안, 정보처리</td> </tr> <tr> <td>산업기사</td> <td>정보보안, 정보처리</td> </tr> <tr> <td>기능사</td> <td>정보처리</td> </tr> </table>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기사	정보보안,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보안,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기사	정보보안,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보안,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학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 관련전공 학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해킹·악성코드 분석 및 H/W·S/W 개발, 시스템·네트워크 관련 설계·개발·운영·보안, 디지털포렌식 ※ 관련 전공: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사이버보안, 디지털포렌식 - 유사학과(학위)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6명	홍보(영상)	지방청 및 경찰서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청 정책홍보 콘텐츠(영상, 사진) 기획·제작 ○ 함정, 파출소 등 현장 채증방법 향상 및 이를 활용한 홍보 ○ 영상물 D/B 관리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업무 역량) 방송, 영화, 광고(홍보) 영상 등 기획·편집 능력 대내외 각종 교육 및 홍보 영상 촬영·콘텐츠 제작 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기획·제작·촬영·편집 등 실무 능력 및 홍보 영상 기획 ○ 전문가용 영상 편집 프로그램 활용 능력 * 프리미어, 파이널컷 등 관련 프로그램 운용 능력
-------	--

응시 자격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 영상기획, 영상제작, 영상촬영, 영상편집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7명	정보통신(전산)	경찰서 및 함정 등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장비 도입·관리·운용 및 정보화시스템 개발·구축·운용·유지보수 ○ 정보기술아키텍처(EA)에 관한 사항 및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도입 및 유지보수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 클라우드(정보자원, 컴퓨팅)에 관한 사항 ○ 네트워크/IP 구축·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계급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 혁신 ○ (업무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등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일반,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 정보보호론,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 빅데이터, 메타버스, AR/VR, 인공지능 등 관련 전문지식
-------	--

응시 자격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간경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IT관련) 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② (공무원경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IT관련)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술사</td> <td>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능장</td> <td>전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사</td> <td>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산업기사</td> <td>사무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정보보안</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td> <td>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td> </tr> </table>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능사</td> <td>전자,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정보기기운용</td> </tr> </table>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	전자	기사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타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기능사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	전자												
기사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타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기능사	전자,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정보기기운용												
※ 관련분야 : 사무자동화, 정보기기운용·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메타버스, 빅데이터, 멀티미디어콘텐츠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7명	정보통신(통신)	경찰서 및 함정 등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함정 레이더, 위성통신 등 항해통신장비 도입·관리·운영 ○ 암호자재의 보관·관리 및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 무선국 및 주파수 확보·관리 ○ GMDSS 인프라 구축·관리·운영 ○ 위성조난시스템 구축·관리·운영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관리·운영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계급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 혁신 ○ (업무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등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장비 사업·운영을 위한 무선통신, 전파전자 관련 전문지식 ○ 전화·팩스·전자교환기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전문지식 ○ 무선국 인·허가, 선박무선국 운용 및 주파수 수급관리에 관한 제반 지식 ○ 위성통신망의 이해 및 레이더에 관한 제반 지식
-------	---

응시 자격 요 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간경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IT관련)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② (공무원경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IT관련)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p>※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p> <p>※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p>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기술사</td> <td>정보통신</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기능장</td> <td>통신설비</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기사</td> <td>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산업기사</td> <td>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기능사</td> <td>통신기기,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td> </tr> </table>	기술사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기능사
기술사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 관련분야 : 통신설비,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방송통신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5명	드론	본청 및 소속기관 (함정, 파출소 포함)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기 운영 및 관리 ○ 무인기 운용인력 교육·훈련 ○ 무인기 유지보수 및 장비관리 ○ 무인기 관련 행정업무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업무 역량) 과업이해력, 문제해결력, 기획력, 의사소통능력, 협조성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비행체 관련법규 및 안전관리 ○ 드론촬영 영상 분석 및 SW활용 ○ 항공 및 드론관련 전문지식 		

응시자격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②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자격증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헬리콥터 실기평가조종사(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학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련전공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② 관련전공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학과 또는 전공이 드론 관련 분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빙 가능해야 하고, 세부전공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관련분야 : 드론(항공) 제작, 드론(항공) 정비, 드론 연구개발, 드론 촬영, 드론 교육 ※ 관련전공 : 드론공학과, 드론정보공학과, 소방행정안전드론과, 드론공간정보과, 드론미디어과, 드론기계과, 무인항공드론과, AId론과, 드론과, 스마트무인항공과, 공간정보드론과, 드론 건설환경과, 스마트드론과, 정보통신드론과, 드론융합과, ICT드론과, 드론봇부서관과, 컴퓨터드론과, 드론산업안전과, 드론융합학과, 드론제작운항과, 인공지능드론학과, 드론기계학과, 드론운용정비과, 드론항공과, 드론산업과, 국방드론항공과, 국방드론과, 무인항공기계과, 전투드론부서관과, 드론로봇공학과, 드론전공, 무인이동체공학전공, 드론학과, 드론·철도 건설공학과,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 무인항공학과, 무인기산업학과, 무인항공기계학과, 무인항공기학전공, 무인항공기학과, 드론응용학과, 드론응용전공, 항공드론학과, 무인기공학과, ICT군사학부(드론봇전공), 드론운용과, 드론전자과 - 유사학과(학위)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생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5명	건축	본청 및 소속기관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청사 신축 및 청사관리 ○ 청사 신축사업 발굴 및 소속기관 사업계획 수립 ○ 신축 진행사업 관리 및 공사 감독 업무 ○ 청사 신축 및 유지보수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시설 관련 기술적 전문 지식, 업무기획 및 분석능력 ○ 법령 및 제도의 이해와 실무 적용 능력 ○ 직무 이해력, 치밀성, 순발력, 조직 헌신, 발전 가능성 등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관련 법령, 제도 등에 관한 지식 ○ 설계 및 내역서 작성, 계약제도에 관한 지식 ○ 도면 등 설계도서의 이해와 시공 및 공사 감독에 관한 지식 ○ CAD를 활용한 도면작성 및 건축 적산 수행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d0e0f0;">기술사</td> <td>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0e0f0;">기능장</td> <td>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0e0f0;">기사</td> <td>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0e0f0;">산업기사</td> <td>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td> </tr> </table>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d0e0f0;">기능사</td> <td>건축목공, 실내건축</td> </tr> </table>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기능사	건축목공, 실내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기능사	건축목공, 실내건축											
※ 관련분야: 시설건축 및 건축물 유지관리, 건설현장 건축시공 및 감리, 건축설계 담당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10	중국어	경찰서 (함정, 파출소 등 소속부서 포함)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중국) 해양치안기관과 교류협력 업무 ○ 국제범죄 첩보수집 및 검거 활동 ○ 불법외국어선 단속(통역) 및 상황처리 ○ 기타 외국(중국) 관련 해양치안활동 업무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업무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분석력, 이해력, 집행관리 능력, 조정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선발대상 언어(중국어) 구사능력(말하기/듣기/쓰기) ○ 국제(중국) 해양환경 및 상황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新BCT(B) 241점 이상 ② 新BCT(B) L&R 801점 이상 ③ 新HSK 6급 190점 이상 ④ SNULT(듣기, 읽기) 총점 90점 이상 ⑤ FLEX(듣기, 읽기) 총점 850점 이상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8.9.) 기준 2년 이내 자격증에 한함	
학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국내학위에 한함) 	
※ 관련전공: 중어중문학과, 중국어학과, 중국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중국어교육과 <주전공 및 복수전공만 인정(부전공 미인정)> - 유사학과(학위)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생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성적 증명서상 전체과목 중 해당 언어 분야 전공과목이 1/2 이상인 경우 자격요건 인정)		

평가방법	분야	계급	주요업무	평가사항
구술시험 (실기)	5급 경채	경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기획업무 전반 ▶ 정부 혁신·적극행정 발굴 및 주요정책 기획·추진 ▶ 조직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행정 관련 전문지식 ▶ 형법, 형사소송법 등 경찰공무원 업무처리를 위한 기본법령 숙지사항 ▶ 해양경찰청에 대한 이해도
	변호사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절차 적법성 검토 ▶ 적용법령 분석·검토 ▶ 법령정비 및 제·개정 ▶ 인권수사 시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법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 수사 적법절차 준수 검토 능력 ▶ 수사미비점 분석·검토능력 ▶ 해양수산법령에 대한 기본지식
	해양기상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상황관리에 필요한 일기예보 및 기후전망, 정보 실시간 확인 및 활용 * 본청·지방청 종합상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항공기상, 태풍·지진 등 예보 ▶ 위성, 레이더 영상 분석 능력
	함정요원 (항해)	경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직무 전반 ▶ 항해장비 및 각종 설비 운영·관리, 항해 계획 수립 업무 ▶ 해양법 및 해사관계 법령 등 해석 및 적용 업무 ▶ 국내·외 해상에서 함정 조함, 수색·구조, 통신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직무 전반 및 항해분야 기본지식 ▶ 직무일반(항해계기, 항법, 항해계획) ▶ 해사법규(COLREG, 해양법 및 국내법 등) 및 해사영어 ▶ 선박운용(선박조종, 선박구조, 해양통신 등)
	함정요원 (기관)	경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직무 전반 ▶ 함정 주·보조기관, 기관 장비 등 각종 설비 운영·관리 ▶ 기관 비상 조치, 손상 제어, 기관 관리 업무 ▶ 국내·외 해상에서 수색·구조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직무 전반 및 기관분야 기본 지식 ▶ 해사영어(표준해사통신영어 등) ▶ 직무일반(내연기관, 외연기관 등) ▶ 전문관리(비상조치, 손상제어, 기관관리 등) ▶ 기계·전기·전자(유체역학, 열역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등)
	과학수사 (사이버)	순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이버범죄수사및지원 ▶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수집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범죄 수사를 위한 문제 해결 능력, 추적방안 등 ▶ 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과 장비 활용·절차·판례에 대한 지식 ▶ 시스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DB, 모바일 등에 대한 지식

평가방법	분야	계급	주요업무	평가사항
구술시험 (실기)	정보통신 (전산)	순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개발, DBMS·서버OS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 네트워크 구성 설계 및 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 사이버공격, 침해 대응,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정보통신 (통신)	순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해통신장비 도입관리운영 및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 무선국 및 주파수 확보·관리 ▶ GMDSS 인프라, 위성조난시스템 및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관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장비 사업·운영을 위한 무선통신, 전파전자 관련 전문지식 ▶ 전화·팩스·전자교환기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전문지식 ▶ 무선국 인·허가, 선박무선국 운용 및 주파수 수급관리에 관한 제반 지식 ▶ 위성통신망의 이해 및 레이더에 관한 제반 지식
	드론	순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기 운영 및 관리 ▶ 무인기 운용인력 교육·훈련 ▶ 무인기 유지보수 및 장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기 관련 법규, 안전규정, 운항 및 안전관리 지식 ▶ 무인기 조종, 촬영, SW 활용 등 운용 지식 ▶ 무인기 유지보수정비 관련 지식 ▶ 무인기 교육, 훈련 관련 지식
	건축	순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청사 신축 및 청사관리 ▶ 청사 신축사업 발굴 및 소속기관 사업계획 수립 ▶ 신축 진행사업 관리 및 공사 감독 업무 ▶ 청사 신축 및 유지보수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관련 법령, 제도 등에 관한 지식 ▶ 설계 및 내역서 작성, 계약제도에 관한 지식 ▶ 도면 등 설계도서의 이해와 시공 및 공사 감독에 관한 지식 ▶ CAD를 활용한 도면작성 및 건축 적산 수행 지식
기능시험 (실기)	홍보 (영상)	순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홍보 콘텐츠(영상, 사진) 기획·제작 ▶ 함정, 파출소 등 현장 채증방법 향상 및 홍보 ▶ 영상물 D/B 관리 * 지방청 및 경찰서 홍보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과 부합하고, 제시된 과제에 적합한 영상제작 능력 ▶ 응용프로그램 활용 수준 ▶ 창의성·정보전달력·완성도

○ 구술실기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

채용분야	채용계급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		
5급 경채	경정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 해양경찰청에 대한 이해도	30%
		전문지식	▶ 행정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도	30%
			▶ 형법, 형사소송법 등 경찰공무원 업무처리를 위한 기본법령 숙지사항	10%
			▶ 행정 관련 전문지식	10%
발전역량	▶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20%		
변호사	경감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30%
		전문지식	▶ 수사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검토능력	30%
			▶ 수사 미비점 분석·검토능력	10%
			▶ 해양수산법령 관련 기초 지식	10%
발전역량	▶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20%		
해양기상	경위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 해양기상관련 일반 지식	10%
			▶ 해양상식	10%
		전문지식	▶ 해양·항공기상, 태풍·지진 등 예보·특보 일반	15%
			▶ 위성, 레이더 영상 분석	15%
			▶ 수치예보, 관측자료, 일기도 분석	15%
			▶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 감시	15%
발전역량	▶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20%		

채용분야	채용계급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		
합정요원 (항해)	경장	구분	내용	비율
		기본지식	▶ 해양경찰 직무 전반 및 항해분야 기본지식	20%
		전문지식	▶ 직무일반 : 항해계기, 항법, 항해계획	20%
			▶ 해사법규 : COLREG, 해양법 및 국내법 등 ▶ 해사영어 : 표준해사통신영어 등	30%
			▶ 선박운용 : 선박조종, 선박구조, 해양통신 등	10%
발전역량	▶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평가	20%		
합정요원 (기관)	경장	구분	내용	비율
		기본지식	▶ 해양경찰 직무 전반 및 기관분야 기본지식 ▶ 해사영어 : 표준해사통신영어 등	20%
		전문지식	▶ 직무일반 : 내연기관, 외연기관 등	20%
			▶ 전문관리 : 비상조치, 손상제어, 기관관리 등	30%
			▶ 기계·전기·전자 : 유체역학, 열역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등	10%
발전역량	▶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평가(질의)	20%		
과학수사 (사이버)	순경	구분	내용	비율
		기본지식	▶ 정보보호 관련 기본지식(정보보호 개론 등)	30%
		전문지식	▶ 해킹 분석, 침해사고 대응, 악성코드 분석 에 관한 기술 및 지식	30%
			▶ 디지털포렌식 관련 경험 및 수사지식(절차·판례 포함)	15%
			▶ 시스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DB 등에 대한 지식	15%
발전역량	▶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심화 질문	10%		

채용분야	채용계급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		
드론	순경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 드론 운영 및 정책에 대한 이대도 지식	10%
		전문지식	▶ 드론 관련 법령의 이해도	15%
			▶ 항공이론 일반에 대한 이해도	20%
			▶ 드론 시스템 전문지식	20%
			▶ 드론 운용 관련 전문지식(해양 특수성 고려)	20%
발전역량	▶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15%		
건축	순경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 청사건축 프로세스의 이해여부	20%
		전문지식	▶ 건축계획 일반 - 건축계획 원론, 각 종 건축물의 건축 계획 등	15%
			▶ 건축구조 일반 - 건축구조 일반, 구조역학 등	15%
			▶ 건축설비 일반 - 환경계획 원론, 전기·위생·승강·공기조화설비 등	15%
			▶ 건축 관련 법령의 이해 - 건축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15%
발전역량	▶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20%		
정보통신 (전산)	순경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 정보화사업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본 지식	20%
		전문지식	▶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	30%
			▶ DBMS, 서버OS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20%
			▶ 네트워크, 정보보안에 대한 전문지식	10%
발전역량	▶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20%		

정보통신 (통신)	순경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 통신장비 사업·운영을 위한 무선통신, 전파전자 관련 전문지식	20%
		전문지식	▶ 전화·팩스·전자교환기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전문지식	20%
			▶ 무선국 인·허가, 선박무선국 운용 및 주파수 수급관리에 관한 제반 지식	30%
			▶ 위성통신망의 이해 및 레이더에 관한 제반 지식	10%
		발전역량	▶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20%

▶ 홍보(영상)

홍보_영상(순경) 실기시험 평가표

응시 분야	홍보_영상 (순경)	응시 번호	실기 번호	성명
-------	------------	-------	-------	----

필적감정용 기재란	(예시문) : 본인은 상이응시자. 동일인임을 보여줍니다. 본인필적 :	생년 월일
--------------	---	----------

평가 내용		배 점 기 준					득 점
		최상	상	중	하	최하	
과제의 이해 (50점)	과제 적합성 (25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50점
	창의성 및 정보전달력 (25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결과물의 품질 (35점)	응용프로그램 활용수준 (20점)	20점	16점	12점	8점	4점	/35점
	영상 완성도 (15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발전역량 (15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15점
득 점 계		100 점					점

위원장	계급(직급)	성명	(인)
-----	--------	----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16조제3항제3호나목 관련)

인 정 과 목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행정학, 국제법, 해사법규, 해양경찰경무론, 해양경비론, 해양안전론, 해양수사(외사를 포함한다)론, 해양정보론, 해양치안정책론, 해양오염방제론, 선박운용론, 해양경찰영어, 해사영어, 선박일반(항해·기관), 내연기관, 보조기계, 수산법규, 수산학개론, 어구·어법·어로학, 어장학, 인명구조학(수영을 포함한다), 전기전자, 전파통신공학, 무도학(체포술을 포함한다), 해양법, 헌법, 항해학, 수색구조론, 해상교통관제론, 항해실습, 기관실습, 해양경찰법제, 범죄학, 해양기상학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과목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

※ 각 과목당 인정학점의 상한은 6학점으로 한다.

○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별표 1]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과목(제3조 관련)

인정과목	인정과목
	비교해양경찰론, 해양경찰사, 형사법, 항해계기학, 해양경찰인권론, 해양레저학, 잠수학, 해양경찰연구방법론

○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별표 2]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 인정과목별 동일과목(제4조 관련)

인정과목	동 일 과 목
해양경찰학개론	해양경찰학(연습), 해양경찰학입문, 해양경찰학세미나, 해양경찰학개론 연습, 해양경찰학개론(I, II)
형법	형법총론(1, 2, I, II),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1, 2, I, II)
행정법	(경찰)행정법(I, II), 행정구제법
행정학	행정학의 이해, 행정학개론
국제법	국제법(I, II)
해사법규	해사법규(1, 2, I, II), 해사법규(연습)
해양경찰경무론	(해양경찰/경찰)조직관리론, 해양경찰조직과 인사관리, (해양경찰/경찰)인사관리론
해양경비론	
해양안전론	해상안전공학(및실습), 해양안전(캡스톤디자인), 해양안전학개론, 해양수상안전, 해상안전실습(I, II), 수상활동실무(I, II), 선박보안및안전, 해상안전, 해사안전법

인정과목	동 일 과 목
해양수사론 (외사 포함)	범죄수사학, 경찰수사론, (해양)범죄수사론, 국제해양범죄와 수사, 데이터베이스활용해양과학수사, 해양경찰현장실무, (해양/해상)사고처리론
해양정보론	해사정보론, (ArcGis적용)해양정보론, 해사정보외사론, 해사정보시스템(및실습)
해양치안정책론	해상민생치안, 해양치안정책(캡스톤디자인)
해양오염방제론	해양오염방제실습, 해양오염방제(캡스톤디자인), 유류 및 해양오염, 해양오염방지론, 직무일반과 해양오염방지(I, II), 해양물리환경학, 해양환경공학
선박운용론	선박운용학(I, II), 선박운용학(및실습), 특수선운용학, 선박조종론(학), 선박정비학
해양경찰영어	기관영어(실습), 경찰영어(I, II)
해사영어	해상교통영어, 해사영어(I, II), 해사통신영어(실습)
선박일반(항해·기관)	선박개론
내연기관	내연기관실습(I, II)
보조기계	선박보조기계, 기계공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제도 및 CAD(실습), 기계공작실습, 보조기계실습(I, II)
수산법규	수산해양법규, 수산법제
수산화개론	수산자원관리학, 수산행정관리론, 수산자원학(및실습)
어구·어법·어로학	어구어법학, 어법학(및실습), 어로실습, 어로학(및실습), 어로관리론, 해양생산기구학(및실습), 해양생산기기학, 어업관리학, 어업정보학(및실습), 해양학, 어구공학(및실습), 전산어구설계(및연습), 어업기계공학(및실습), 어획물(처리/취급)및적부, 어업계측공학(및실습), 수산해양기계학
어장학	어장학(및실습), 해양어장환경학(및실습), 어장탐사공학, 어장정보처리(및실습/및분석), 해양환경어장학(및실습)
인명구조학 (수영 포함)	해양생존 및 인명구조, 구조수영(I, II), 인명구조학(I, II), 인명구조 및 실습
전기전자	전기공학, 전기기기(및실습), 선박전기전자(실습), 전기용접(실습), 전기·자동화(실습)(I, II), 전자공학, 시퀀스제어
전파통신공학	GMDSS통신(실습/운용), 해상통신공학(및실습)
무도학 (체포술 포함)	(경찰)무도(I, II), 무도학(및실습)(I, II), (경찰)체포술, 무술(1, 2, 3)
해양법	국제해양법, 해양법및국제협약, (직무일반및)국제해사협약, 해양법과국가주권, 해역과해양법의이해

인정과목	동 일 과 목
헌법	헌법총론, 헌법각론, 헌법(I, II)
항해학	항해학(I, II), 항해학개론, 지문항해학(및실습), 전파항해학(및실습), (전파)천문항해학(및실습), 기본항해학, 천문항해
수색구조론	수색구조 및 비상관제, 선박안전 및 수색구조, 빅데이터활용수색구조론
해상교통관제론	교통관리학, 해상교통법, 해상교통비상관제학, 해상교통관제설비학, 해상교통관리(론), 해상교통관제론, 해상교통론, 비상관제, 항로표지와 해상관제설비론
항해실습	(연)근해승선실습, 원양승선실습(1, 2), 종합승선실습, (기초안전)승선실습, 연안승선실습, 기초승선실습, 승선실습(I, II, III), 승선항해실습(I, II), 항해실습(1, 2, 3, 4)
기관실습	해기현장실습, 기관실습(I, II), 디젤기관실습
해양경찰법제	해양경찰법제(I, II), 해양경찰실무법규, (해양)경찰법, 해양경찰작용법, 해양관계법이해
범죄학	범죄대책론, (해양)범죄예방론, 해양범죄론, 빅데이터활용해양범죄통계학, 범죄의 이해, 형사정책, 범죄학개론
해양기상학	해양기상, 해양기상학(및실습), 해상일기분석과 실무예보
비교해양경찰론	
해양경찰사	
형사법	형사사례및판례, 형사법연습
항해계기학	항해계측공학(및실습/및실습), 알파및레이다항법, 레이더항법(및실습), 레이더(더)시뮬레이션(실습), 레이더ARPA및시뮬레이션실습, 전자해도(및실습), 전자해도(ECDIS)실습, 레이더및관제설비학, 항해시스템, 항해계기(및)실습, 전파항법및실습, 선박조종시뮬레이션실습
해양경찰인권론	경찰과 인권
해양레저학	해양레저실무, 해양스포츠, 수상레저실무, 스포츠수영
잠수학	잠수론, 스포츠잠수, 산업잠수, 수중안전활동, 수중활동실무(I, II)
해양경찰연구방법론	

○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4-8호 『2024년 해양경찰 공무원 연간 채용계획 등 공고』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

인정과목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
해양경찰학개론	해양경찰학입문, 해양경찰학개론 I, 해양경찰학개론II, 해양경찰학개론연습
	해양경찰학개론, 해양경찰학연습
	해양경찰학, 해양경찰학세미나
형법	형법총론1, 형법총론2, 형법각론
	형법총론 I, 형법총론II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1, 형사소송법2
	형사소송법 I, 형사소송법II
행정법	행정법 I, 행정법II
국제법	국제법 I, 국제법II
해사법규	해사법규, 해사법규연습
	해사법규1, 해사법규2
	해사법규 I, 해사법규II
해양안전론	해상안전실습 I, 해상안전실습II
	수상활동실무 I, 수상활동실무II
해양오염방제론	해양오염방제론, 해양오염방제실습
	직무일반과해양오염방지 I, 직무일반과해양오염방지II
선박운용론	선박운용학 I, 선박운용학II
해양경찰영어	기관영어, 기관영어실습
	경찰영어 I, 경찰영어II
해사영어	해사영어 I, 해사영어II
내연기관	내연기관, 내연기관실습
	내연기관실습 I, 내연기관실습II

인정과목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
보조기계	보조기계실습 I, 보조기계실습II
	기계제도및CAD, 기계제도및CAD실습
인명구조학 (수영포함)	구조수영 I, 구조수영II
	인명구조학 I, 인명구조학II
전기전자	전기·자동화실습 I, 전기·자동화실습II
무도학 (체포술포함)	무도 I, 무도II
	무도학 I, 무도학II
	무술1, 무술2, 무술3
헌법	헌법총론, 헌법각론
	헌법 I, 헌법II
항해학	항해학 I, 항해학II
항해실습	연근해승선실습, 원양승선실습1, 원양승선실습2
	기초안전승선실습, 연안승선실습, 근해승선실습, 원양승선실습
	승선실습, 종합승선실습
	승선실습 I, 승선실습II
	기초승선실습, 승선실습 I, 승선실습II, 승선실습III
	승선항해실습 I, 승선항해실습II
	항해실습1, 항해실습2, 항해실습3, 항해실습4
기관실습	기관실습 I, 기관실습II
해양경찰법제	해양경찰법제 I, 해양경찰법제II
잠수학	수중활동실무 I, 수중활동실무II

1. 동일한 과목이 총론과 각론으로 나뉘는 경우
2. 동일한 과목이 1, 2, 3(또는 I, II, III)으로 나뉘는 경우
3. 동일한 과목이 기본(입문·기초) 과목과 심화 과목(연습·실습·실험·종합 등)으로 나뉘는 경우
4. 항해실습 과목의 실습구역이 연안·근해·원양 등으로 나뉘는 경우

해양경찰학 전공 인정(동일·유사)과목 이수 확인서

○ 학교/학부(과) :

○ 성 명 :

○ 생년월일 :

연번	과목명	학점	성적	연번	과목명	학점	성적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총	학점

위 사람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 인정과목,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 00학점을 위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대학교 ○○ 총장 ○ ○ ○ (직인)

담당자	(부서·직위)	성명 (인)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m²)

▶ 인정과목과 동일과목 모두를 인정하나, 중복해서 인정하지 않음

유사과목 이수 인정 요청서

○ 학교/학부(과)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사람이 아래와 같이 이수한 과목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 인정과목 및 동일과목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니, 유사과목으로 인정을 요청합니다.

연번	인정과목명	동일과목명	이수과목명	학점	성적

20 년 월 일

○○ 대학교 ○○ 총장 ○ ○ ○ (직인)

담당자	(부서·직위)	성명	(인)
	(연락처)		

▶ 인정·동일과목의 과목명이 다를 경우에는 '유사과목 이수 인정 요청서'와 강의계획서 추가 제출

붙임 5

해양경찰학개론 출제범위

목 차	주요 내용	세부 내용
개 념	해양경찰의 의의	해양경찰의 임무, 수단, 관할, 이념, 윤리 등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시대적 구분에 따른 연혁 및 제도
	비교 해양경찰	국내·외 관련기관 비교
법적 토대	해양경찰 조직	해양경찰조직법 내용·근거, 해양경찰 기관
	해양경찰 작용	해양경찰작용법 내용·근거, 경찰권 발동의 한계, 해양경찰 작용의 형태 및 구제 수단
행 정	해양경찰 행정관리	조직, 정책, 인사, 재정, 홍보, 보안, 장비, 행정응원, 개혁·변화관리 등
	해양경찰 통제	통제의 의의와 필요성, 기본요소, 통제유형 등
경 비	해양경비	경비의 의의, 경비세력 운용, 해상검문검색, 불법선박 단속 등
	작전·위기관리	통합방위작전, 국가 위기관리, 비상대비 등
	해양대테러·경호	해양대테러 활동, 해상경호 등
구조안전	수색구조	수색구조 제도, 체계, 절차 등
	해양안전	파출소·출장소 운영, 현장 안전관리 등
	수상레저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 조종면허, 수상레저 안전관리, 수상레저 사업 등
	해상교통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해상교통관제 등
수사정보	수 사	수사의 개념, 법적 근거, 수사서류, 수사절차·활동, 수사행정, 과학수사 등
	정 보	정보의 특성, 정보의 분류, 정보활동 및 한계, 정보의 순환 등
	보 안	방첩활동, 보안수사, 대남전략 노선과 대남공작기구, 대공상황 등
	외 사	외사유형, 외사대상, 외사수사·정보활동, 국제협력 등
해양환경	해양오염방제	방제계획, 오염사고대비대응, 방제장비 및 기자재 운용 등
	해양오염예방	해양오염 감시·단속 등

* 조직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세부내용 변경 可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4]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제2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관련)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및 질환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色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신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문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비고 : 체격 항목 중 팔다리가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평가 항목	내용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 가능한 상태	팔다리와 손·발가락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척추만곡증 (허리휘는 증상)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상지관절의 정상여부	상지 3대 관절(손목·팔꿈치·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 동시 자연스럽게 앉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하지관절의 정상여부	하지 3대 관절(발목·무릎·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앉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5cm × 4.5cm)

①시험실시기관	응시계급 ^② ·분야	응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압인 또는 계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색 신 (색 각)	청 력
	우: ()		
			우: ()dB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 장 / 비 뇨 기 계 질 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 격 계 질 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 부 X 선 검 사	
약물(TBPE)검사		기 타 특 이 사 항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 격	합격 사유
합격 여부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①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등)
 - 나. ②란에는 응시한 계급과 분야를 적어야 합니다.

(예: 경감 변호사, 경위 혈기조증, 경장 함정요원, 순경 공채 등)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개인(결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벽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신부나 홍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홍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홍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홍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민성골수상백혈병'에 해당하나 골리백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寛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미터 달리기(초)	13.0 이하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58 이상	57 ~54	53 ~50	49 ~46	45 ~42	41 ~38	37 ~33	32 ~28	27 ~23	22 이하
	좌우약력 (kg)	61 이상	60 ~59	58 ~56	55 ~54	53 ~51	50 ~48	47 ~45	44 ~42	41 ~38	37 이하
	50미터 수영(초)	130초 이하									
여자	100미터 달리기(초)	15.5 이하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55 이상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19	18 ~13	12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31 이상	30 ~28	27 ~25	24 ~22	21 ~19	18 ~16	15 ~13	12 ~10	9 ~7	6 이하
	좌우약력 (kg)	40 이상	39 ~38	37 ~36	35 ~34	33 ~31	30 ~29	28 ~27	26 ~25	24 ~22	21 이하
	50미터 수영(초)	150초 이하									

비고

1.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및 좌우약력 중 한 종목 이상에서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3. 좌우약력의 경우 좌우 각각 측정된 수치 중에서 최대값으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4. 50미터 수영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 수치를 기준으로 남자 130초, 여자 150초 이하인 경우 해당 종목을 합격한 것으로 보며, 체력검사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 시간 이내에 완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5.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 2]

체력검사 종목별 평가방법(제6조제2항 관련)

종 목	측 정 방 법 등
100m 달리기	<p>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 이상</p> <p>나. 시설기구 1) 100m 직선주로 2코스 이상 2) 계측기 2개 3) 출발신호기 1개 4) 2인 1조가 동시에 출발할 때 중간 코스는 공간으로 둔다.</p> <p>다. 측정방법 1) 측정시간은 1/10초단위로 한다. 2) 중도에서 넘어졌을 때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달리게 한다.</p> <p>라. 기록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 측정할 수 있다. 2) 수기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 위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10초 단위로 계속 기록한다. 단, 넘어졌을 때는 몸통의 일부가 결승선 상에 있을 경우는 유효하다.</p>
악 력	<p>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p> <p>나. 실시도구 악력기</p> <p>다. 측정방법 악력기에 의한 기계측정을 한다.</p> <p>라. 기록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4회를 실시하여 최댓값을 기록한다.</p>
윗몸일으키기	<p>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p> <p>나. 시설기구 1) 윗몸일으키기대 2) 계측기(1대 이상)</p> <p>다. 측정방법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 측정할 수 있다. 2) 양발을 30cm 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3) 측정횟수는 상체를 일으켜서 양쪽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갔을 때 1회로 하고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p>

종 목	측 정 방 법 등
	<p>라. 기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확한 동작으로 1분 동안에 실시한 횟수를 기록한다. 2) 운동속도는 자유로이 한다. 3) 실시도중 목뒤에 각지를 낀 손이 빠지거나 몸을 앞으로 굽혔을 때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으면 그 횟수는 무효로 한다.
팔굽혀펴기	<p>가. 검사요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3) 검사원 1명 이상 <p>나. 실시도구 매트, 계측기(1대이상)</p> <p>다. 측정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 측정할 수 있다. 2)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머리~다리)과 붕 간격이 5cm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한다. 4)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p>라. 기록 : 1분내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p>
수 영	<p>가. 검사요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측원 1명 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 이상 <p>나. 시설기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0m 수영장 (25m 수영장 왕복 가능) 2) 초시계(1개 이상) 3) 출발신호기 1개 <p>다. 측정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영장 레인을 사용한다. 2) 측정시간은 초 단위로 한다. <p>라. 기록 계측원은 출발신호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응시자의 신체의 일부가 도착지점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초 단위로 계측하여 정확히 기록한다.</p>

비고 :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평가 진행순서) 악력 - 팔굽혀펴기 - 윗몸일으키기 - 100m 달리기 - 수영

▶ (유의사항)

가. 현장 사정 및 응시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측정방법 및 진행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나. 구체적인 평가방법(변경사항 등) 및 유의사항은 체력검사 당일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으로 응시자는 현장 안내사항을 잘 듣고 이행하여야 하며, 안내사항을 정확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2019.1.8)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붙임] 참조)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체력시험 대상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 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참고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

- ▶ www.kada-ad.or.kr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종목 : 기타, 직업 : 기타
- ▶ www.kimsonline.co.kr
- ▶ www.druginfo.co.kr

참고**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I. 금지약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drostanolone ▶ methenolone
 -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 stanozolol
 -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2. 이뇨제 : 총 3종**

-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 methylhexanamine(dimethylpentylamine)
-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 pentazocine ▶ pethidine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 판정기준

약물군	약물 성분	판정기준	단위
동화작용제	drostanolone	검출 시	
	methenolone	검출 시	
	methasterone	검출 시	
	testosterone	검출 시	비고참조
	1-testosterone	검출 시	
	clenbuterol	검출 시	
	stanozolol	검출 시	
이뇨제	hydrochlorothiazide	검출 시	
	chlorothiazide	검출 시	
	furosemide	검출 시	
흥분제	methylhexanamine	검출 시	
	methylephedrine	> 10	μg/ml
	ephedrine	> 10	μg/ml
마약류	Buprenorphine	검출 시	
	dextromoramide	검출 시	
	diamorphine(heroin)	검출 시	
	fentanyl	검출 시	
	hydromorphone	검출 시	
	methadone	검출 시	
	morphine	검출 시	
	oxycodone	검출 시	
	oxymorphone	검출 시	
	pentazocine	검출 시	
	pethidine	검출 시	

※ 비고

- ▶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은 신체 발육 및 필수대사에 필요한 호르몬으로서 인체 내에서 일정량이 생성(내인성)되며, 인체에서 대사되어 에피테스토스테론(Epitestosterone)으로 변화하며, 건강한 성인의 경우 테스토스테론과 에피테스토스테론의 비율(T/E ratio)은 1:1임. T/E ratio가 4:1 초과시에는 외부로부터 외인성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투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II. 금지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양식)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기간(주/월) _____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 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 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붙임 9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제6조 제9항 관련)

점 수 분 야	5 점	3 점	2 점	1 점
운 전	-	-	-	- 1종대형, 1종보통 -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에 한함)
무 도		- 무도 4단 이상	- 무도 3단	- 무도 1·2단
정보처리 (전 산)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정보보안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 정보처리기능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자·통신 (통 신)	-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기술사 - 전자응용기술사	- 통신설비·전자기기 기능장 - 전자계산기·전자기사 - 무선설비·전파전자 통신·정보통신·방송 통신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전자 산업기사 -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통신선로 ·방송통신산업기사	- 전자기기기능사 - 전자계산기기능사 -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통신기기 ·방송통신기능사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또는 1급) - E-Test 프로페셔널 1급 (워드, 엑셀, PPT 중 1)
법무·특허	- 변호사, 변리사	- 법무사	-	-
세무·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사, 관세사	- 전산세무 1·2급 - 전산회계운용사 1급	- 전산회계 1·2급 - 전산회계운용사 2·3급
차량정비	-	- 자동차정비기사·기능장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동력기계정비기능사
화 약 류	-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제조·화약류 관리기사	- 화약류제조·화약류 관리산업기사	-
재 난	- 건설안전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설안전·산업안전 ·소방설비·가스기사	- 위험물산업기사 - 건설안전·산업안전 ·소방설비·가스산업 기사	- 위험물기능사 - 가스기능사
안전관리	- 수상구조사	-	- 인명구조요원강사	- 인명구조요원
의 료	-	- 응급구조사 1급	- 응급구조사 2급 - 상담심리사 1급, 임상 심리사 1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 간호사 - 상담심리사 2급, 임상 심리사 2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국 어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8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9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9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53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

점수 분야	5 점	3 점	2 점	1 점
영 어	-	- TOEIC 850 이상 - TOEFL(IBT 92, PBT 580 이상) - TEPS 800 이상(New TEPS 452 이상) - FLEX 76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780 이상 - PELT(main) 415 이상 - G-TELP Level 2 82 이상 - IELTS 5.5 이상	- TOEIC 750 이상 - TOEFL(IBT 71, PBT 527 이상) - TEPS 700 이상(New TEPS 386 이상) - FLEX 654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90 이상 - PELT(main) 340 이상 - G-TELP Level 2 69 이상 - IELTS 5.0 이상 - OPIc AL 등급	- TOEIC 650 이상 - TOEFL(IBT 57, PBT 487 이상) - TEPS 600 이상(New TEPS 327 이상) - FLEX 553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00 이상 - PELT(main) 240 이상 - G-TELP Level 2 56 이상 - IELTS 4.5 이상 - OPIc IH 등급
일 어	-	- J.L.P.T N1 - J.P.T 850 이상	- J.L.P.T N2 - J.P.T 750 이상	- J.L.P.T N3 - J.P.T 650 이상
중 국 어	-	-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신 BCT(B) 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 신 H.S.K 5급 - 신 BCT(B) 241 이상, 신 BCT(B) L/R 801 이상 - 구 BCT(B) 801 이상	-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신 BCT(B) 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잠 수	- 잠수기능장 - 잠수산업기사	- 잠수기능사	-	-
레 저	-	-	-	-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2급 - 요트조종면허
해 양	- 해기사 1·2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3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4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5·6급(항해, 기관, 운항사)
수산·어로	- 수산양식기술사 - 어로기술사	- 수산양식기사 - 어업생산관리기사	- 수산양식산업기사 - 어로산업기사	- 수산양식기능사
드 론	-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中 1) 실기평가 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中 1) 지도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 中 1) 조종자(1종, 2종)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선)조종자
환 경	- 폐기물처리기술사	- 해양환경·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 처리기사	- 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환경기능사

※ 비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다음 각 목의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 나.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 다.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2.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학능력자격증(국어, 외국어)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시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채용자격 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인명구조감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 무도가산점 인정 단체

구분	인정단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10)	-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 대한유도회 - 대한검도회 - 대한가라테연맹 - 대한택견회 - 대한우슈협회 - 대한복싱협회 - 대한민국의합기도총협회 - 대한킥복싱협회 - 대한주짓수회 - 대한크라쉬연맹 '24.1.1. 인정 취소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 (50)	- 대한기도회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협회 -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 대한용무도협회 - 대한합기도총연맹 - 대한합기도총협회 - 세계합기도무도연맹 - 대한합기도연맹 - KOREA합기도중앙협회 - 세계태권무도연맹 -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 대한중합무술격투기협회 - 국제특공무술연합회 - 대한검도연합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국제당수도연맹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대한특공무술협회 - 세계경찰무도연맹 -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대한특공무술연맹 - 대한해동검도협회 - 한국해동검도협회 - 대한무에타이협회 - (사)한국권투협회 '23.1.27 - 세계합기도협회 -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 (사)한국킥복싱협회 신규 - 한국경호무술협회 - 국술원 - 대한특전무술협회 인정 - 한국특공무술협회 - 대한민국합기도회 - 경찰무도교육원 - 세계용무도연맹 - 대한신무합기도협회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 ITF태권도협회 - 한국무예진흥원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23.1.27 - 대한프로태권도협회 - 대한민국의합기도무술협회 - 신대한기도합기도무술협회 인정 - 재남무술원 -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 한국복싱협회 취소 - 한국정통합기도협회 - 특전사 특공무술 - 세계합기도연맹
	- (사) 대한삼단봉협회 '24.1.17 신규인정
	- (사)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24.3.8 신규인정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1)	- 택견보존회

※ '23.1.26. 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합기도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한국복싱협회, 세계합기도연맹

※ '23.12.31. 이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하는 단체(1) : 대한크라쉬연맹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지정단체

단체명	전화번호	단체명	전화번호
대한적십자사	02-3705-3617	(사)대한수중 핀수영협회	02-420-4293
(재)한국YMCA전국연맹	02-735-4612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02-720-7145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02-886-8522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055-551-9413
(사)대한인명구조협회	02-975-1339	(사)대한안전연합	062-222-0841
(사)수상인명구조단	033-653-7913	(사)대한생활체육지도자연협회	02-394-1331 031-943-4447
(사)한국해양구조협회	051-714-3695	(사)대한구조협회	054-476-2119
(사)한국구조연합회	02-365-1112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063-221-9800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02-928-2258	* '18.11.10 지정취소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 '23.1.16. 지정취소	051-404-0900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18.11.17~'22.6.19 지정취소	02-422-6119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 고객센터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확인

※ 지정취소 단체 자격증은 지정취소일 이전 자격증만 인정

ex)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 '18.11.9.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18.11.17~'22.6.19 사이에 취득한 자격증 인정 X

1 임용유예 신청

- **관련 근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 **임용유예 신청 대상** : 신규채용(공채·경채 무관) 되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 **(적용 대상)** 채용시험 합격 후 채용후보자로 등록*되어 교육원 입교 예정인 자
 - * 「채용후보자등록원서」 제출로 등록되며, 「채용후보자등록원서」 **미제출자는 임용포기로 간주**
 - **(신청 방법)** 최종합격자 서류제출 시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와 「임용유예 신청서 +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 **※ 입교 후에는 신청불가**
- **임용유예 기간** :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 내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으나, 신임교육기간 감안, 실질적으로 1년 내외 가능*
 - * 유동적인 입교일정 감안, 신임교육이 연 2회 실시되는 경우 → '당초 입교일 부터 차차기 입교일' 까지, 신임교육이 연 3회인 경우 '당초 입교일부터 차차차기 입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 **임용유예 규모** : 현장 결원 방지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지방청별 채용인원(임용예정 계급별)의 5% 범위 내외 가능
 - * 본청 채용자(경정 공채·간부후보생 등)의 경우, 관련 분야별 채용인원의 5% 범위 내외 가능
- **임용유예 사유** : ① 병역복무, ② 학업의 계속, ③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 ④ 임신·출산, ⑤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고사항 >

구 분	관련 근거	적용 대상	신청 절차	사 유	기 간	비고
임용 유예	「해양경찰 임용규정」 <대통령령>	신규채용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록 시 신청 <신임교육 입교 前>	① 병역복무 ④ 임신·출산 ② 학업 ⑤ 그 밖에 부득이인정 ③ 질병	2년	임용 권자
차기 입교	「해양경찰 교육원 학칙」 <교육원 예규>	교육원에서 교육 중인 학생	교육 중 사유 발생 시 신청 <신임교육 입교 後>	① 질병 ④ 추가 합격통보* ② 천재지변, 교통사고등 ⑤ 그 밖에 정당한 사유 ③ 가족사망등	2년	교육 원장

* **추가합격통보**를 받고 입교일로부터 7일 이내 입교 불가 시 **차기입교자**로 분류될 수 있음

2

주요 임용유예 상세 요건

□ 병역복무를 위한 임용유예 : 제1호 및 제5호 적용

○ 제1호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구분	주요 내용
상세 요건	<p>① 군 未필자(「병역법」상 병역의 의무복무자)가 ② 해양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이후(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에 ③ 「병역법」상의 의무복무*(대학생 군사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단기 복무장교·부사관 포함)를 시작하는 경우</p> <p>* 현역병 입대자,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보충역</p>
효과	<p>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병역 의무복무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에 산입하지 아니함(「경찰공무원법」 제12조 제4항)</p> <p>* 제대 후에도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2년이 그대로 유효하여, 학업의 계속 등 기타 다른 사유로 임용유예 신청 가능</p>

○ 제5호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분	주요 내용
상세 요건	<p>① 병역법상 의무복무자가 병역복무 도중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남은 의무복무기간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p> <p>② 「병역법」이 아닌, 「군인사법」에 따른 군 복무*를 시작하거나 同 군 복무 중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p> <p>* 군 장학생 출신의 장교복무, 학사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군 복무</p>
효과	<p>위의 의무복무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에 산입되므로, 2년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 가능</p>

□ **학업의 계속을 위한 임용유예 : 제2호 적용**

-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2년) 내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임용유예를 인정할 학업의 진행 정도) 적용

구분	주요 내용
상세 요건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 재학 중인 자*로 ②그 학업의 계속**을 위해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은 임용유예 불가하며, 새롭게 대학·대학원(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불가, ** 휴학·어학연수 시 학업의 계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즉시 임용유예 해제 ②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에는 당연 허용
효과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하는 임용유예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에 산입되므로, 2년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 가능

□ **장기요양(6개월 이상)이 필요한 질병을 위한 임용유예 : 제3호 적용**

-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기준으로 판단

□ **임신·출산을 위한 임용유예 : 제4호 적용**

- 임신확인서 및 출산(예정) 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

3 임용유예 심사 기준

❖ 임용유예는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되며, 심사결과는 **입교일 전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 **심사기준(인원조정 기준)**

- 본청·지방청별 채용인원(임용예정 계급별)의 5% 초과하여 **임용유예 신청자가 발생할 경우** 임용유예 허용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 현장 충원을 등을 고려하여 5% 범위 내외로 허용 가능

4

임용유예 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 임용유예 신청서(서식 1)와 함께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조항	내 용	증빙서류
제1호 (또는 제5호)	병역복무 사유 임용유예	① 입대 전 또는 복무 중에는 '입영통지서 사본',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관련서류 1부 ② 전역 후에는 병역 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 1부 제출
제2호	학업의 계속	① 재학·휴학·재적증명서 등 지금의 학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② 졸업학점과 현재까지 이수학점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함께 제출 * 현재 휴학 중인 경우 휴학증명서를 먼저 제출하고, 복학하여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제3호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하다는 진단서
제4호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임신헌인서 또는 출산(예정) 증명서 등
제5호	기타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연장** : 임용유예 중인 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 임용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 임용유예 연장 신청(다른 사유로 추가 신청 포함)
 - 임용유예 연장(다른 사유로 인한 추가 신청 포함)이 가능한 경우
 - ▶ 현재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 기존 6개월 정도 임용유예(학업출산질병 등)를 한 자가 다른 사유로 연장 및 추가신청을 원하는 경우(최대 기간인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 고려 필요)
 - 임용유예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2호부터 5호까지에 따라 임용유예를 1년 신청하여 그 기간이 끝나가는 자
 - ▶ 이미 1년 임용유예를 한 경우, 남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에 신입교육을 마치고 임용까지 해야 하므로 연장 불가
- **철회** : 임용유예 중인 자는 임용유예 사유 소멸 즉시, 또는 임용유예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철회 신청서' 제출
 - ▶ 철회 후 차기 신입교육 일정에 따라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취소**
 - (임용유예 취소) 임용유예 목적 외 사용 적발, 채용후보자 명부 삭제 사유를 제외한 범죄 행위 적발, 기타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임용유예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용후보자 명부 삭제)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또는 「해양경찰청 임용규정」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해당할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교육 입교 및 대기

□ 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된 경우 즉시 임용유예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대상자는 신임교육 입교를 위해 대기

▶ 임용유예가 소멸한 때에 **입교 명령에 즉시 응하지 않는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 임용유예자는 채용후보자 신분을 가지므로 「경찰공무원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기준 적용

Q. 임용유예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학업의 계속, 군복무, 6개월 이상 질병, 임신·출산, 그 밖에 유예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임용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병원발급 진단서(6개월 이상), 군복무 확인서, 입대예정서 등)와 함께 임용유예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인력운영 사정을 고려하여 유예신청의 사유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추후 개별 통보하게 됩니다.

* 임용유예 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임교육 등 일정을 고려하여 심사

Q. 합격자로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휴학 중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려면 2년을 더 다녀야 하는데 임용유예가 가능한지요? 1년을 더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A.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학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고 학업을 위해 유예 신청한 경우 바로 복학하여 학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신임교육 일정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는 약 1년 내외의 기간 만큼 임용유예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수해야 할 학기가 남았다면, 임용 후 연수휴직을 통해 학업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다만,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필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1년 연장할 수 있지만, 개별 수험생의 신청에 따라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임용유예 사유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임용유예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해양경찰청에서 선발하는 채용시험 합격인원은 정부기관의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가 학업의 계속,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이 어려워 임용유예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인력운영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임용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임용유예 시 불이익이 있나요?

A. 임용유예 자체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초임 발령일이 늦춰지는 만큼 당연히 재직기간을 반영하는 인사(승진, 전보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Q. 시험에 최종 합격했는데, 개인발전을 위해 임용유예를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최종 합격 후 대학원 진학 등 새로이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학업의 계속"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용유예 승인이 어렵습니다.

Q.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병역법상 병역의 의무복무기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A. 병역법상 병역의 의무복무자의 경우 병역법상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징집·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위 의무복무기간은 현역병 입대자,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보충역 등의 병역법상 의무복무기간을 말합니다.

Q. ROTC 단기복무장교로 복무하는 경우 병역 의무복무로 임용유예를 할 수 있는지요?

A. 대학생 군사훈련 과정을 이수한 단기 복무장교의 경우에는 임용유예가 가능하며, 「경찰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의무 복무기간은 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Q. 제가 군 장학생 신분으로 졸업 후 7년간 장교로 복무해야 하는데, 군 입대 전에 합격하고 군 복무를 사유로 7년간 임용유예를 할 수 있는지요?

A. 대학교 재학 중에 군에서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일정기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군 장학생의 복무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 계산에 포함되며,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임용유예 5호(기타 부득이한 사유) 적용>

Q. 가정 주부입니다. 육아를 위해 임용유예를 신청 할 수 있나요?

A. 임용유예는 학업의 계속, 병역 의무수행, 6개월 이상의 질병, 임신과 출산, 그 밖에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따라서 육아를 위해서는 임용유예가 불가하며, 임용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Q. 현재 부서관으로 군 복무 중입니다. 올해 합격하고 남은 복무기간 5년 동안 임용유예가 가능하나요?

A. 부서관 등의 직업군인이 「군인사법」에 의한 군 복무를 이유로 임용유예를 신청 시, 남은 군 복무기간이 5년인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를 승인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잔여 군 복무기간이 있으므로 채용후보자 명부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 5호(기타 부득이한 사유) 적용>

Q. 대학 3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내년에 군에 다녀와야 하고, 제대 후 복학해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임용유예 기간이 초과될 것 같습니다.

A.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승인되나, 「병역법」상의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 복무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2년간의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보장받으므로 군 복무 후 학업의 계속을 이유로 다시 임용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 1호 적용(징집·소집) ○ + 임용유예 2호 적용(학업의 계속) ○>

다만, 임용유예는 임용권자가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한학기가 남았는데 코로나19로 사이버 수업 중입니다. 임용유예가 가능한가요?

A. 학기 재학 중이므로 임용유예 신청 사유는 되나, 학교에 따라 사이버 강의 활용·야간 수업 전환 등 충분히 임용 후에도 학업을 완료 할 수 있을 경우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신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졸업 시까지 남은 학기가 1학기(6개월)인 경우 임용유예는 6개월인가요?
아니면 1년까지 가능한가요?

A. 임용유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가되는 사항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만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1학기만 남은 상황에서 그 이상의 기간인 1년을 임용유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임용유예가 될 소지가 있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6개월만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Q.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허가 받았는데 이 기간 중 해외 어학 연수를 다녀오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학을 할 수 있는지?

A.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용유예 기간은 유예사유(학업의 계속)를 해소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용유예 기간 중에 유예사유가 되었던 학업을 마치지 않고 휴학을 하는 것은 임용유예 사유의 소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방송통신대 재학생의 경우에도 임용유예가 가능한지?

A. 학업의 계속에 따른 임용유예는 공무원으로 임용됨으로 인해 학교 출석을 못하여 졸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일정기간 임용을 유예하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대의 경우 대부분 기간 동안 출석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용이 학업의 계속을 방해한다고 할 수 없어 임용유예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야간대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야간대학의 수업은 공무원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Q. 올해 합격하고, 내년 초에 편입을 해서 졸업 후 임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임용유예 제도의 취지상 학업의 계속 사유를 이유로 임용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합격 당시의 학업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시험합격 후에 편입이나 입학 등을 하는 것은 임용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학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즉시 복학하여 학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